

2021년도 제2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8. 24.(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홍지만(분과위원장), 김민아, 임형주, 임형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

공 청구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21건(안건번호 제2021-105634호~10765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05634호~105635호는 저작물성 및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해당 안건과 같은 경우 권리자(민원인)가 직접 민·형사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게시물이 이미 판매 중단 내지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105636호~105638호는 웹하드에 만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07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2건(안건번호 제2021-1137호~1138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안건 2건 모두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08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05634호~105635호는 민원인이 특정 제품(달—무드등)을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상세페이지를 온라인 쇼핑몰 '♥♥'의 판매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2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모두 ♥♥이므로 저는 이번 안건에서 회피하겠음.
- A 위원: 민원인이 '하루에 100만원씩 손해가 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의미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은 같은 아이템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중에 최저가 판매자만이 노출되도록 하고 있음. 다른 판매자들은 알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상품의 대표 이미지, 후기 등을 해당 최저가 판매자에게 몰아주는 시스템임. 그래서 민원인은 자기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노출을 빼앗겨 아예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판매자가 중국인으로 보이는데, 판매제

품은 민원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맞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인은 본인들이 제작한 상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먼저 심의대상 게시물이 실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부터 알 수 없음.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나로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주문했을 때 어떤 제품이 올지도 알 수 없음.
- A 위원: 사진을 올리는 건 ♥♥이 하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상세 설명 사진은 각 판매자가 올리고, 각 대표 이미지는 ♥♥ 시스템에 의해 모아짐.
- A 위원: 몰아주기 때문에 민원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다만 해당 대표이미지 몰아주기는 판매자 약관에 미리 동의를 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대표 이미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음.
- B 위원: 다만 사진의 저작물성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움. 저작물이어야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러한 단순 제품 사진에 대해 저작물로 인정해 보호해 주기 쉽지 않음. 이러한 상품 사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창작성을 인정하는 경향임. 그리고 저작권 등록이 수리되었다 해서 바로 권리확인이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유로 들 필요가 있으며, 타 분과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부결한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물 등록된 이미지의 무단이용에 관하여, 예전에 2분과에서 심의한 적이 있음. 부품 모양의 픽토그램을 저작권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권리자가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작권 등록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 수리되는 것으로 해당 픽토그램이 저작물 등록이 되었다고 반드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외의 부분은 기존대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한 적이 있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기존 판례와 약간 차이가 있다면, 사진 저작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상세 페이지 설명 전체를 편집저작물로 등록하였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판매자가 저작물 전체를 다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사진만 사용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비교 수록하였는데, 리모컨을 줄이고 설명 위치를 바꾸는 등 일부 변형 편집을 하였음.
- A 위원: 이것만으로는 저작물성이 불명확하므로 부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D 위원: 저도 부결에는 동의하지만 신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피해가 너무 큼.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이렇게 저가로 직접 판매하면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보호원에서도 처리가 어려운 사안인데, 민원인은 소송도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 온라인서비

스제공자가 빠르게 처리해야 함.

- 오진해 전문위원: ♥♥의 △△△△△ 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한 상태이며 9월부터 약관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보호원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105634호~105635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B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05634호~105635호는 원안대로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05636호~10563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C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05636호~10563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05639호~10765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영화)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06362호 ‘(영화)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2021)’는 2021. 8. 4. 개봉한 해외 영화로 밴드에서 배포중임.
(방송 ‘[중점](방송)루시퍼 시즌5(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07428호 ‘[중점](방송)루시퍼 시즌5(2020)’는 2020. 8. 21. 공개한 해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350포인트에 판매중임.
(출판 ‘[중점](출판)남편이 미모를 숨김 (출판:연담,카카오페이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07584호 ‘[중점](출판)남편이 미모를 숨김 (출판:연담,카카오페이지)’은 2020. 8. 31부터 연재중인 웹툰으로 웹하드에서 50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4,075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05639호~10765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B, C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05639호~10765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05634호~105635호는 부결 하고 안전번호 제2021-105636호~105638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05639호~10765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0쪽부터 1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

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137호~1138호 2개 안전 모두 가결함.

4. 폐회 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2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8. 31.

분과위원장 홍지만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